
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(곽대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79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0. 21.

발의자 : 곽대훈 · 주호영 · 정태옥

박명재 · 김명연 · 이채익

정운천 · 김정재 · 김도읍

박맹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국민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우선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근무여건상 주택 특별공급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너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 이에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추가하여 주택 특별공급의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임(안 제30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
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1항 전단 중 “근무한”을 “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